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17899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178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407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우아이앤씨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변론 종결 2018. 11. 22.

판결 선고 2018. 12.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407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이 사건 당사자변경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한 후 제1심에서의 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하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몰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와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전제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감액된 금액만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2쪽 제12행의 "대륙산기 주식회사"를 "대륙산기(주)"로, 제6쪽 제3행 및 그 이하의 "한일신재생 주식회사"를 모두 "한일신재생(주)"으로 각 고쳐 쓴다.

(b) 제2쪽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고 하고, 그중 기계설비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c) 제4쪽 제19행의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이 사건 당사자변경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이 사건 각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처럼 청구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실질적·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추가된 청구가 기존의 청구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할 뿐인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모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로 말미암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의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또한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 대부분은 추가된 청구를 심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내용, 증명계획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심리를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정하는 청구변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 및 새로운 주장 요지

1) 이 사건 기계설비는 그 가동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던 중 결국 가동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 정하는 양수도대금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또는 이 사건 전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원고의 시범가동 요청을 거부한 채 원고(또는 이 사건 전 양수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설령 피고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분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이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 또한 취소되었으므로, 위 변경계약이 정하는 계약금 물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기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전항 기재와 같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양도자산 중 핵심인 이 사건 기계설비가 악취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양도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이 거부되었기 때문인데, 대출신청이 거부된 것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 나아가 피고는 대출실행을 장담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유도·독려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의 시범가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던 점, ⑤ 위와 같은 시범가동이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였더라면 원고가 조기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을 물취당하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물취금액 13억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적절하게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주)F이 2010년경 이 사건 양도자산 중 일부인 토지(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2011년경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② 2011. 5. 25. 경산시 B 일대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주)F, (주)G],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주)H]의 각 대표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악취 및 먼지 저감대책 등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 ③ (주)F이 2011. 6. 출입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악취를 외부로 새어 나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경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④ 경산시의 사실조회회신에는 '(주)F 관련 악취피해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자산을 양수한 한일신재생(주)이 2017. 12. 29. 유기성하수처리오니시설로 시설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악취발생민원 및 행정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주)F은 위 ③항 기재와 같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011. 9.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받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마치는 등 계속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을 운영한 사실, ⑥ 피고는 (주)F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준 시공사로서 (주)F이 위 시설설치를 위해 받은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인으로서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13. 12. 31.경 이 사건 양도자산을 양수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④ 내지 ⑥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내지 ③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가 계속되는 악취발생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 때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3조 진술 및 보장

3.3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아래의 사항은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에서 제외되며, "양도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일체의 법적 책임(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3.1. "양도인"은 본건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양수도 대상 자산 중 기계설비의 하자, 결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3.2. "양도인"은 본건 시설의 가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시설이 소재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 여부에 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민원을 처리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3.3.3. "양도인"은 본건 시설과 관련한 법적 분쟁(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상사중재, 보전소송, 집행소송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3.3.4.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전에 양수도 대상 자산 및 그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이행하였고, 양수도 대상 자산 전부가 누락 없이 존재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양도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의 누락 여부 및 상태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다) 위 계약조항들은 그 내용상 동종 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해 의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전 양수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실사를 함으로써 그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기계설비 가동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향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성능과 하자, 결함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 제기되는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자산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도 이 사건 당사자변경합의 당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기계설비가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위 계약 내용 및 전항 기재 사정들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착오에 빠지게 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물취금액이 감액되어야 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위 4.가.2)항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나) 그리고 ①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 정하는 물취금액(계약금)이 전체 양수도대금의 10%로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인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121억 5천만 원(= 전체 대금 135억 원 - 계약금으로 기지급된 13억 5,000만 원)에 대한 잔금지급기일(2015. 4. 24.)부터 이 사건 양도자산을 새로운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시점(2016. 12.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일텐데, 위 미지급 잔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더라도 2,003,917,808원(= 121억 5천만 원 × 10/100 × 602/365, 원 미만은 버림)에 이르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인 13억 5,000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점(따라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의 물취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히 과다하여 당사자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
관련하여 새롭게 한 주장도 이유 없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조광국

판사이은상